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 및 조치요청

1.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14 ~ 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3.9(월)까지 연장**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30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탄소중립정책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원순환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무관 **박동휘** 행정사무관 대결 2026. 1. 30. **김명연**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299 (2026. 1. 30.)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mcee.go.kr

전화번호 044-201-7362 팩스번호 044-201-7351 / eastsun04@mcee.go.kr / 대국민 공개